

의안
번호

1024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모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3. 10. 8.(화)
- 나. 제출자 : 김지근 의원 외 3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3. 10. 14.(월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3. 10. 15.(화)

2. 제정이유

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의회·듣는 의정을 구현하고 의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정모니터 임무 (안 제4조)
- 나. 의정모니터 구성 (안 제5조)
- 다. 임무수행 지원 (안 제9조)
- 라. 활동보상금 지급 (안 제10조)
- 마. 운영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11조)
- 바. 의정활동 파악·분석 (안 제13조)

4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-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시키고, 의정활동 및 의회 발전에 필요한 객관적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 및 건의 등을 추구하는 열린의정 구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정모니터의 임무와 구성, 운영협의회 설치·운영, 의정활동 파악·분석,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10조 및 제14조의 실비보상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
- 다만,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